

# 농업정책과



# 축산업 허가·등록(휴업폐업등록재개등록사항변경) 신청

## 1. 사무안내

축산업(가축사육업·종축업·부화업·정액등처리업)영위에 따른 시설·장비를 갖춘 자가 허가·등록 또는 축산업을 허가·등록한자가 등록사항 변경, 휴업·폐업·등록재개 등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축산업을 등록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

## 4. 관련법규

- 축산법 제22조
- 축산법 시행규칙 제27조, 제28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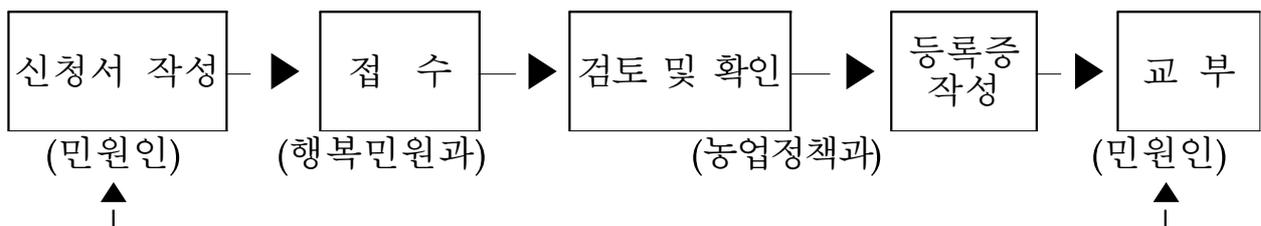
5. 수수료 : 없음

6. 구비서류 : 신청서, 시설·장비 등의 현황을 기재한 서류

##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구 분	제출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협조부서	비고
허가, 변경허가	화 순 군	15일	농업정책과	-	
신고	화 순 군	7일	농업정책과	-	
휴업·폐업·등록재개· 등록사항변경	화 순 군	5일	농업정책과	-	
종축업·부화업·정액처리업 허가	화 순 군	15일	농업정책과	-	

## 8. 민원처리 흐름도



# 가축사육업 [ ]허개 ]변경 허가 신청서

## ([ ]한우, [ ]육우)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5일
------	------	------	-----

신청인	① 성 명	② (법인)등록번호
	③ 주 소	④ 전 화 번 호

⑤ 사업장 명칭

⑥ 사업장 소재지

( : )

	⑦번호	⑧건축물종류 (건축면적)	⑨시설의 형태	⑩가축의 종류	⑪사육면적(m <sup>2</sup> )	⑫사육마릿수 (적정사육두수)
가축 사육 시설						
	계					

「축산업」 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27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허가신청 가. 「축산업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매몰지, 시설, 장비, 가축사육규모 등의 현황을 적은 서류 1부 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로서 허가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신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처리시설의 설치를 증명하는 서류 다.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 계획 1부 라. 「축산업」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변경 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 또는 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제5항에 따른 고유번호 증명 서류(신청인이 법인이 아닌 단체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축산업 허가증(휴업·폐업 신고 및 변경 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3.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또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관리대장(「건축법」 상 건축허가, 건축신고, 가설건축물 건축허가 또는 축조신고 대상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4. 「건축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관련 정보	

(뒤쪽)

### 개인정보 및 제3자 제공·활용 동의서

-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 및 가축사육 정보 등을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축산업 허가·등록자 관리·정기점검·교육, 가축방역지원, 축산물안전관리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 등을 이용하여 「축산법」 제22조의2, 제28조, 제33조의2에 따라 축산업 허가 등에 관한 정보의 통합활용, 축산업 허가·등록자 관리·정기점검·교육, 가축방역지원, 축산물안전관리 등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권한의 위임·위탁된 기관, 지방자치단체, 「축산법」 제33조의3에 따른 교육총괄기관 및 교육운영기관에게 제공 및 활용하는 데 동의합니다.
-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 등을 이용하여 교육총괄기관 및 교육운영기관으로부터 「축산법」 제33조의2제3항에 따른 보수교육 기간을 문자메시지로 받아보는 것에 동의합니다.
  - 위 개인정보 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 동의는 축산업 허가·등록이 말소되는 날까지 유효하며(허가·등록정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총괄기관은 허가·등록 말소 후에도 축산업 허가·등록 및 교육이수자 정보관리 등을 위하여 위 개인정보를 보유·이용할 수 있습니다.
  - 위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축산법」에 따른 축산업 허가·등록 정보를 활용하는 축산 관련 각종 지원 사업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축산업 허가·등록자의 보수교육 안내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 수집·이용·제공·활용 동의자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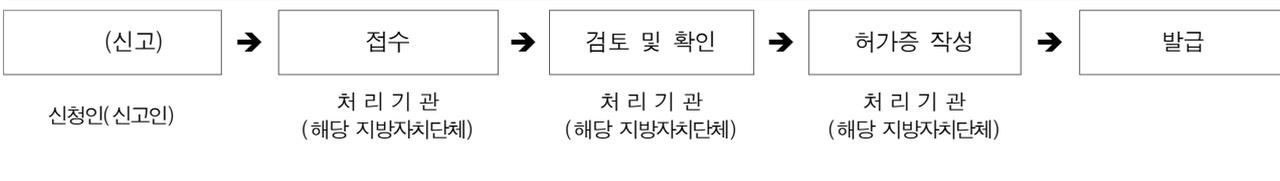
년 월 일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자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유의사항

- ㉦란에는 가축사육시설이 여러 동인 경우 각 시설별 번호를 적습니다.
- ㉧란에는 아래 구분에 따라 가축사육시설의 건축물 종류를 각 동별로 적고, 괄호 안에 건축면적을 적습니다.
  - 가. 고정건축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 나. 가설건축물: 간이축사용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구조의 시설물 등을 말함(비가림시설은 포함하고, 가축의 운동장은 제외합니다)
- ㉡~㉣란에는 「축산법 시행령」 별표 1의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에 따라 각 동별로 시설의 형태, 시설형태별 사육면적, 가축의 종류, 사육마릿수 및 적정사육두수를 적습니다.

### 신청절차



# [ ]허가 가축사육업(젖소) [ ]변경 허가 신청서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15일
------	------	------	-----

신청인	① 성명	② 주민(법인)등록번호
	③ 주소	④ 전화번호

⑤ 사업장 명칭

⑥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⑦번호	⑧건축물종류 (건축면적)	⑨사육기준	⑩시설형태	⑪성장단계	⑫사육면적 (㎡)	⑬사육마릿수 (적정사육두수)
가축							
사육							
시설							
계							

「축산법」 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27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허가신청 가. 「축산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매몰지, 시설, 장비, 가축사육규모 등의 현황을 적은 서류 1부 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로서 허가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신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처리시설의 설치를 증명하는 서류 다.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 계획 1부 라. 「축산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변경 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 또는 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제5항에 따른 고유번호 증명 서류(신청인 또는 신고인이 법인이 아닌 단체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축산업 허가증(휴업·폐업 신고 및 변경 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3.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또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른 가설 건축물 관리대장(「건축법」 상 건축허가, 건축신고, 가설건축물 건축허가 또는 축조신고 대상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4. 「건축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관련 정보	

### 개인정보 및 제3자 제공·활용 동의서

-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 및 가축사육 정보 등을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축산업 허가·등록자 관리·정기점검·교육, 가축방역지원, 축산물안전관리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 등을 이용하여 「축산법」 제22조의2, 제28조, 제33조의2에 따라 축산업 허가 등에 관한 정보의 통합활용, 축산업 허가·등록자 관리·정기점검·교육, 가축방역지원, 축산물안전관리 등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권한의 위임·위탁된 기관, 지방자치단체, 「축산법」 제33조의3에 따른 교육총괄기관 및 교육운영기관에게 제공 및 활용하는 데 동의합니다.
-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 등을 이용하여 교육총괄기관 및 교육운영기관으로부터 「축산법」 제33조의2제3항에 따른 보수교육 기간을 문자메시지로 받아보는 것에 동의합니다.
  - ※ 위 개인정보 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 동의는 축산업 허가·등록이 말소되는 날까지 유효하며(허가·등록정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총괄기관은 허가·등록 말소 후에도 축산업 허가·등록 및 교육 이수자 정보관리 등을 위하여 위 개인정보를 보유·이용할 수 있습니다.
  - ※ 위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축산법」에 따른 축산업 허가·등록 정보를 활용하는 축산 관련 각종 지원 사업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축산업 허가·등록자의 보수교육 안내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활용 동의자)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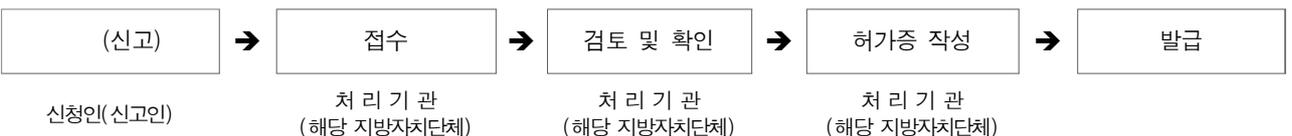
년 월 일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자)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유의 사항

- ㉗란에는 가축사육시설이 여러 동인 경우 각 시설별 번호를 적습니다.
- ㉘란에는 아래 구분에 따라 가축사육시설의 건축물 종류를 각 동별로 기재하고, 괄호 안에 건축면적을 적습니다.
  - 가. 고정건축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 나. 가설건축물: 간이축사용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구조의 시설물 등을 말함(비가림시설은 포함하고, 가축의 운동장은 제외합니다)
- ㉙~㉛란에는 「축산법 시행령」 별표 1의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에 따라 각 동별로 적용하는 사육기준, 시설형태·성장단계별 사육면적, 사육마릿수 및 적정사육두수를 적습니다.

### 처리 절차



# 가축사육업(돼지) [ ]허가 [ ]변경 허가 신청서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15일
------	------	------	-----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법인)등록번호
	③주소	④전화번호

⑤ 사업장 명칭

⑥ 사업장 소재지

( : )

	⑦번호	⑧건축물종류 (건축면적)	⑨사육기준	⑩성장단계·경영 형태	⑪사육면적(m <sup>2</sup> )	⑫사육마릿수 (적정사육두수)
가축 사육 시설						
	계					

「축산법」 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27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허가신청 가. 「축산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매몰지, 시설, 장비, 가축사육규모 등의 현황을 적은 서류 1부 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로서 허가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신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처리시설의 설치를 증명하는 서류 다.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 계획 1부 라. 「축산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변경 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	---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 또는 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소득세법」 제 168조제5항에 따른 고유번호 증명 서류(신청인이 법인이 아닌 단체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축산업 허가증(휴업·폐업 신고 및 변경 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3.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또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관리대장(「건축법」 상 건축허가, 건축신고, 가설건축물 건축허가 또는 축조신고 대상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4. 「건축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관련 정보	
---------------	---	--

### 개인정보 및 제3자 제공·활용 동의서

-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 및 가축사육 정보 등을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축산업 허가·등록자 관리·정기점검·교육, 가축방역지원, 축산물안전관리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 등을 이용하여 「축산법」 제22조의2, 제28조, 제33조의2에 따라 축산업 허가 등에 관한 정보의 통합활용, 축산업 허가·등록자 관리·정기점검·교육, 가축방역지원, 축산물안전관리 등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권한의 위임·위탁된 기관, 지방자치단체, 「축산법」 제33조의3에 따른 교육총괄기관 및 교육운영기관에게 제공 및 활용하는 데 동의합니다.
-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 등을 이용하여 교육총괄기관 및 교육운영기관으로부터 「축산법」 제33조의2제3항에 따른 보수교육 기간을 문자메시지로 받아보는 것에 동의합니다.
  - ※ 위 개인정보 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 동의는 축산업 허가·등록이 말소되는 날까지 유효하며(허가·등록정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총괄기관은 허가·등록 말소 후에도 축산업 허가·등록 및 교육이수자 정보관리 등을 위하여 위 개인정보를 보유·이용할 수 있습니다.
  - ※ 위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축산법」에 따른 축산업 허가·등록 정보를 활용하는 축산 관련 각종 지원 사업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축산업 허가·등록자의 보수교육 안내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활용 동의자)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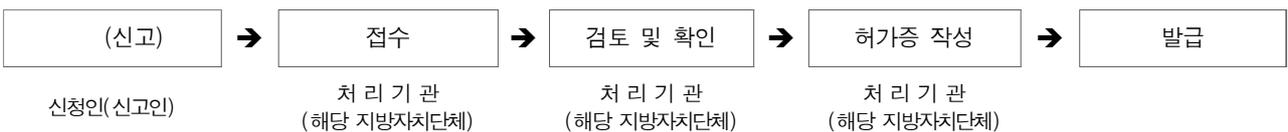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년	월	일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자)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유의 사항

- ⑦란에는 가축사육시설이 여러 동인 경우 각 시설별 번호를 적습니다.
- ⑧란에는 아래 구분에 따라 가축사육시설의 건축물 종류를 각 동별로 적고, 괄호 안에 건축면적을 적습니다.
  - 가. 고정건축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 나. 가설건축물: 간이축사용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구조의 시설물 등을 말함(비기림시설은 포함하고, 가축의 운동장은 제외합니다)
- ⑨~⑫란에는 「축산법 시행령」 별표 1의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에 따라 각 동별로 적용하는 사육기준, 성장단계·경영 형태별 사육면적, 사육마릿수 및 적정사육두수를 적습니다.

### 처리 절차



# 가축사육업([ ]닭, [ ]오리) [ ]허가 [ ]변경 허가 신청서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15일
------	------	------	-----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법인)등록번호
	③주소	④전화번호

⑤ 사업장 명칭

⑥ 사업장 소재지

( : )

가축사육시설	⑦번호	⑧건축물종류 (건축면적)	⑨가축의 종류	⑩시설의 형태 (단수, 칸수)	⑪사육면적 (1칸당 면적·사육수수)	⑫사육마릿수 (적정사육수수)
	계					

⑬ 부화용알 생산      사육시설:      동,      m<sup>2</sup>,      수수:      수

「축산업법」 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27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허가신청 가. 「축산업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매몰지, 시설, 장비, 가축사육규모 등의 현황을 적은 서류 1부 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로서 허가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신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처리시설의 설치를 증명하는 서류 다.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 계획 1부 라. 「축산업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변경 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 또는 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제5항에 따른 고유번호 증명 서류(신청인이 법인이 아닌 단체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축산업 허가증(휴업·폐업 신고 및 변경 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3.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또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관리대장(「건축법」 상 건축허가, 건축신고, 가설건축물 건축허가 또는 축조신고 대상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4. 「건축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관련 정보	

### 개인정보 및 제3자 제공·활용 동의서

-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 및 가축사육 정보 등을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축산업 허가·등록자 관리·정기점검·교육, 가축방역지원, 축산물안전관리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 등을 이용하여 「축산법」 제22조의2, 제28조, 제33조의2에 따라 축산업 허가 등에 관한 정보의 통합활용, 축산업 허가·등록자 관리·정기점검·교육, 가축방역지원, 축산물안전관리 등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권한의 위임·위탁된 기관, 지방자치단체, 「축산법」 제33조의3에 따른 교육총괄기관 및 교육운영기관에게 제공 및 활용하는 데 동의합니다.
-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 등을 이용하여 교육총괄기관 및 교육운영기관으로부터 「축산법」 제33조의2제3항에 따른 보수교육 기간을 문자메시지로 받아보는 것에 동의합니다.
  - 위 개인정보 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 동의는 축산업 허가·등록이 말소되는 날까지 유효하며(허가·등록정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총괄기관은 허가·등록 말소 후에도 축산업 허가·등록 및 교육이수자 정보관리 등을 위하여 위 개인정보를 보유·이용할 수 있습니다.
  - 위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축산법」에 따른 축산업 허가·등록 정보를 활용하는 축산 관련 각종 지원 사업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축산업 허가·등록자의 보수교육 안내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활용 동의자)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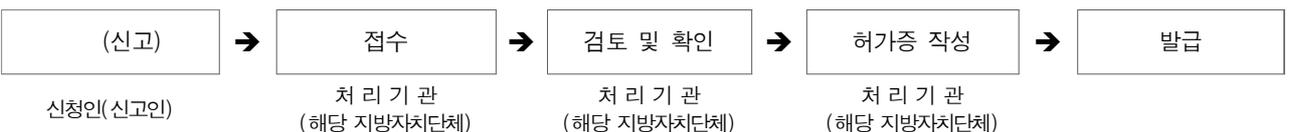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년      월      일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자)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유의사항

- ⑦란에는 가축사육시설이 여러 동인 경우 각 시설별 번호를 적습니다.
- ⑧란에는 아래 구분에 따라 가축사육시설의 건축물 종류를 각 동별로 기재하고, 괄호 안에 건축면적을 적습니다.
  - 가. 고정건축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 나. 가설건축물: 간이축사용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구조의 시설물 등을 말함(비가림시설은 포함하고, 가축의 운동장은 제외합니다)
- ⑨~⑫란에는 「축산법 시행령」 별표 1의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에 따라 각 가축의 종류별로 시설의 형태, 사육면적, 사육마릿수 및 적정사육수수를 적습니다.
  - 가. ⑩란에는 각 동의 가축사육시설 형태를 적고, 시설의 형태가 케이지인 경우 괄호 안에 각 동의 케이지 단의 수와 케이지 전체 칸의 수를 적습니다.
  - 나. ⑪란에는 각 동의 시설 형태별로 사육면적을 적고, 시설의 형태가 케이지인 경우 전체 케이지 면적과 괄호 안에 케이지 1칸당 면적 및 사육수수를 적습니다.
  - 다. ⑫란에는 각 동의 시설 형태별로 사육마릿수와 괄호 안에 적정사육수수를 적고, 시설의 형태가 케이지인 경우 적정사육수수는 1칸당 적정사육수수 × 해당 케이지 전체 칸의 수로 산출합니다.
- ⑬란에는 가축사육시설 중 「축산법 시행규칙」 [별표 3의3] 제3호가목2)·3)에 따른 알을 생산하는 닭과 오리의 사육 시설 면적과 동수를 적습니다.

### 처리절차



## 가축사육업 등록신청서

( [ ]한우·육우, [ ]젖소, [ ]돼지, [ ]닭, [ ]오리, [ ]양  
[ ]사슴, [ ]거위, [ ]칠면조, [ ]메추리 [ ]타조, [ ]꿩, [ ]기타 : )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기타는 가축의 종류를 적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등록 7일
------	------	------------

신청인	① 성 명	② (법인)등록번호
	③ 주 소	④ 전 화 번 호

⑤ 사업장 명칭

⑥ 사업장 소재지

( : )

⑦	구분	동수(동)	면적(m <sup>2</sup> )	⑧ 비고
가축 사육 시설	고정건축물			
	가설건축물			
	기타			
	계			

⑨ 사육 마릿수

⑩ 부화용알 생산 사육시설: 동, m<sup>2</sup>, 수수: 수

「축산법」 제2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축산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매몰지, 시설, 장비, 가축사육규모 등의 현황을 적은 서류 1부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로서 허가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신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처리시설의 설치를 증명하는 서류 3.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 계획 1부 4. 「축산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 또는 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제5항에 따른 고유번호 증명 서류(신청인이 법인인 아닌 단체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또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른 가설 건축물 관리대장(「건축법」 상 건축허가, 건축신고, 가설건축물 건축허가 또는 축조신고 대상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건축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관련 정보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년 월 일

( 공동이용 동의자)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및 제3자 제공·활용 동의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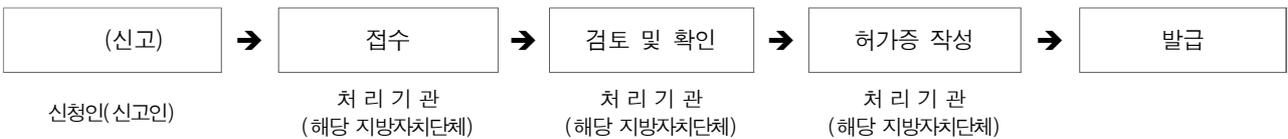
-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 및 가축사육 정보 등을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축산업 허가·등록자 관리·정기점검·교육, 가축방역지원, 축산물안전관리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 등을 이용하여 「축산법」 제22조의2, 제28조, 제33조의2에 따라 축산업 허가 등에 관한 정보의 통합활용, 축산업 허가·등록자 관리·정기점검·교육, 가축방역지원, 축산물안전관리 등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권한의 위임·위탁된 기관, 지방자치단체, 「축산법」 제33조의3에 따른 교육총괄기관 및 교육운영기관에게 제공 및 활용하는 데 동의합니다.
-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 등을 이용하여 교육총괄기관 및 교육운영기관으로부터 「축산법」 제33조의2제3항에 따른 보수교육 기간을 문자메시지로 받아보는 것에 동의합니다.
  - 위 개인정보 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 동의는 축산업 허가·등록이 말소되는 날까지 유효하며(허가·등록정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총괄기관은 허가·등록 말소 후에도 축산업 허가·등록 및 교육이수자 정보관리 등을 위하여 위 개인정보를 보유·이용할 수 있습니다.
  - 위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축산법」에 따른 축산업 허가·등록 정보를 활용하는 축산 관련 각종 지원 사업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축산업 허가·등록자의 보수교육 안내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 수집·이용·제공·활용 동의자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의 사 항

- ㉗란에는 실제 가축사육에 직접 사용되는 모든 시설을 적습니다.
  - 가. 고정건축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하는 시설물
  - 나. 가설건축물: 간이축사용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구조의 시설물(비가림시설은 포함하고, 가축의 운동장은 제외합니다)
  - 다. 기타: 가목 및 나목 외의 시설로서 실제 가축사육에 직접 사용되는 시설(사슴·면양 또는 염소 울타리의 경우는 울타리의 반경을 적습니다)
- ㉘란에는 「축산법 시행령」 별표 1의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의 가축의 종류별 가축사육시설 분류에 따른 시설형태별로 동수 및 면적을 적고, 시설형태가 2가지 이상인 경우에는 시설형태별로 동수와 면적을 함께 적습니다(닭의 경우에는 산란용과 육용을 구분하여 적습니다).
- ㉙란의 사육시설에는 ㉗란의 가축사육시설 중 「축산법 시행규칙」 별표 3의3 제3호가목2)·3)에 따른 알을 생산하는 닭과 오리의 사육시설 면적과 동수를 적습니다.
- 제출서류 중 시설·장비 등의 현황을 적은 서류에는 시설별 면적을 함께 표시합니다.

처 리 절 차



**종축업 [ ]허개 [ ]변경 허가**  
**[ ]휴업 [ ]폐업 [ ]영업재개**

**신청서**  
**신고서**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허가 15일 기타 7일

신청인	① 성 명	② (법인)등록번호
(신고인)	③ 주 소	④ 고 유 번 호

사업장	⑤ 소 재 지 ( : )					
	⑥ 명 칭		⑦ 가 축 종 류			
	⑧ 종 축 종 류	암	수	계		
	⑨ 사 육 형 태	원종돈(GGP) · 원종계(GPS) · 원종 오리(GPS)		종돈(GP) · 종계(PS) · 종오리(PS)		
	⑩ 가 축 사 육 시 설	동			m <sup>2</sup>	
	⑪ 그 밖 의 시 설	동			m <sup>2</sup>	
	⑫ 케 이 지 사 육 시 설					
	번호	단의 수	칸의 수	1칸당 면적	적정사육수	비고
	계					

⑬ 휴업, 폐업, 영업재개 및 허가사항 변경의 내용

「축산법」 제22조제1항·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27조의2·제2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신고)합니다.

신청(신고)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신청(신고)인 제출서류	1. 허가신청 가. 「축산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매몰지, 시설, 장비, 가축사육규모 등의 현황을 적은 서류 1부 나. 축산관련학과 졸업증명서, 축산기사 이상의 자격증 사본 또는 종축업체 근무경력증명서 1부 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로서 허가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신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처리시설의 설치를 증명하는 서류 라.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 계획 1부 마. 「축산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변경 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	--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 또는 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소득세법」 제 168조제5항에 따른 고유번호 증명 서류(신청인 또는 신고인이 법인이 아닌 단체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축산업 허가증(휴업·폐업 신고 및 변경 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3.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또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관리대장(「건축법」 상 건축허가, 건축신고, 가설건축물 건축허가 또는 축조신고 대상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4. 「건축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관련 정보	
---------------	--	--

**개인정보 및 제3자 제공·활용 동의서**

- 이 신청서(신고서)에 기재한 신청인(신고인)의 개인정보 및 가축사육 정보 등을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축산업 허가·등록자 관리·정기점검·교육, 가축방역지원, 축산물안전관리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이 신청서(신고서)에 기재한 신청인(신고인)의 개인정보 등을 이용하여 「축산법」 제22조의2, 제28조, 제33조의2에 따라 축산업 허가 등에 관한 정보의 통합활용, 축산업 허가·등록자 관리·정기점검·교육, 가축방역지원, 축산물안전관리 등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권한의 위임·위탁된 기관, 지방자치단체, 「축산법」 제33조의3에 따른 교육총괄기관 및 교육운영기관에게 제공 및 활용하는 데 동의합니다.
- 이 신청서(신고서)에 기재한 신청인(신고인)의 개인정보 등을 이용하여 교육총괄기관 및 교육운영기관으로부터 「축산법」 제33조의2제3항에 따른 보수교육 기간을 문자메시지로 받아보는 것에 동의합니다.
  - ※ 위 개인정보 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 동의는 축산업 허가·등록이 말소되는 날까지 유효하며(허가·등록정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총괄기관은 허가·등록 말소 후에도 축산업 허가·등록 및 교육이수자 정보관리 등을 위해 위 개인정보를 보유·이용할 수 있습니다.
  - ※ 위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축산법」에 따른 축산업 허가·등록 정보를 활용하는 축산 관련 각종 지원 사업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축산업 허가·등록자의 보수교육 안내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      수집·이용·제공·활용 동의자      )	신청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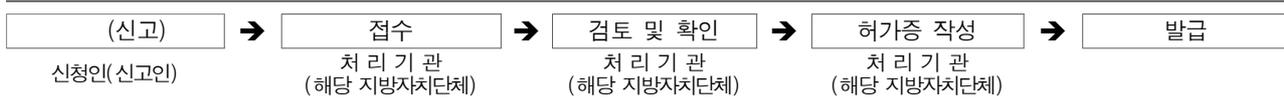
년      월      일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자)	신청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기타사항**

- ④란은 휴업·폐업·영업재개 신고 및 변경 허가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 ⑦란에는 종돈업, 종계업 또는 종오리업 중 하나를 적습니다.
- ⑧란에는 종돈업의 경우에는 종돈 또는 번식용 씨돼지 중에서, 종계업·종오리업의 경우에는 산란용 또는 육용 중 해당되는 가축의 종류와 마릿수를 모두 적습니다.
- ⑨란에는 해당하는 곳에 모두 표시합니다.
- ⑫에는 케이지를 사용하여 종계를 사육하는 경우 케이지 사육시설 현황을 적습니다. 적정사육수수는 「축산법 시행령」 별표 1의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에 따라 산출하여 기재합니다.
- ⑬란에는 실제 사유가 발생한 날을 함께 적습니다.
- 제출서류 중 시설 및 장비 기준에 해당하는 종축, 시설, 인력 등의 현황을 적은 서류에는 시설별 면적을 함께 표시합니다.

**처리절차**





### 개인정보 및 제3자 제공·활용 동의서

- 이 신청서(신고서)에 기재한 신청인(신고인)의 개인정보 및 가축사육 정보 등을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축산업 허가·등록자 관리·정기점검·교육, 가축방역지원, 축산물안전관리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이 신청서(신고서)에 기재한 신청인(신고인)의 개인정보 등을 이용하여 「축산법」 제22조의2, 제28조, 제33조의2에 따라 축산업 허가 등에 관한 정보의 통합활용, 축산업 허가·등록자 관리·정기점검·교육, 가축방역지원, 축산물안전관리 등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권한의 위임·위탁된 기관, 지방자치단체, 「축산법」 제33조의3에 따른 교육총괄기관 및 교육운영기관에게 제공 및 활용하는 데 동의합니다.
- 이 신청서(신고서)에 기재한 신청인(신고인)의 개인정보 등을 이용하여 교육총괄기관 및 교육운영기관으로부터 「축산법」 제33조의2제3항에 따른 보수교육 기간을 문자메시지로 받아보는 것에 동의합니다.
  - 위 개인정보 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 동의는 축산업 허가·등록이 말소되는 날까지 유효하며(허가·등록정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총괄기관은 허가·등록 말소 후에도 축산업 허가·등록 및 교육이수자 정보관리 등을 위하여 위 개인정보를 보유·이용할 수 있습니다.
  - 위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축산법」에 따른 축산업 허가·등록 정보를 활용하는 축산 관련 각종 지원 사업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축산업 허가·등록자의 보수교육 안내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 수집·이용·제공·활용 동의자 )	신청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정액등처리업 [ ]허개 [ ]변경 허가**  
**[ ]휴업 [ ]폐업 [ ]영업재개**

**신청서**  
**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허가 15일 기타 7일

신청인 (신고인)	성명	(법인)등록번호
	주소	
( : )		

사업장	상호명
	소재지

취급품목

휴업, 폐업, 영업재개 및 허가사항 변경의 내용

「축산법」 제22조제1항·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27조의2·제2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신청인 (신고인) 제출서류	1. 허가신청 가. 「축산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매몰지(종축을 보유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시설, 장비 등의 현황을 적은 서류 1부(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나. 가축인공수정사 또는 수의사의 면허증 사본 각 1부(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로서 허가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신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처리시설의 설치를 증명하는 서류 라.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 계획 1부(종축을 보유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마. 「축산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변경 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보유종축의 능력 및 혈통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영업재개 신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 또는 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제5항에 따른 고유번호 증명 서류(신청인 또는 신고인이 법인이 아닌 단체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축산업 허가증(휴업·폐업 신고 및 변경 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3.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또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관리대장(「건축법」 상 건축허가, 건축신고, 가설건축물 건축허가 또는 축조신고 대상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4. 「건축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관련 정보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년 월 일

( 공동이용 동의자)	신청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개인정보 및 제3자 제공·활용 동의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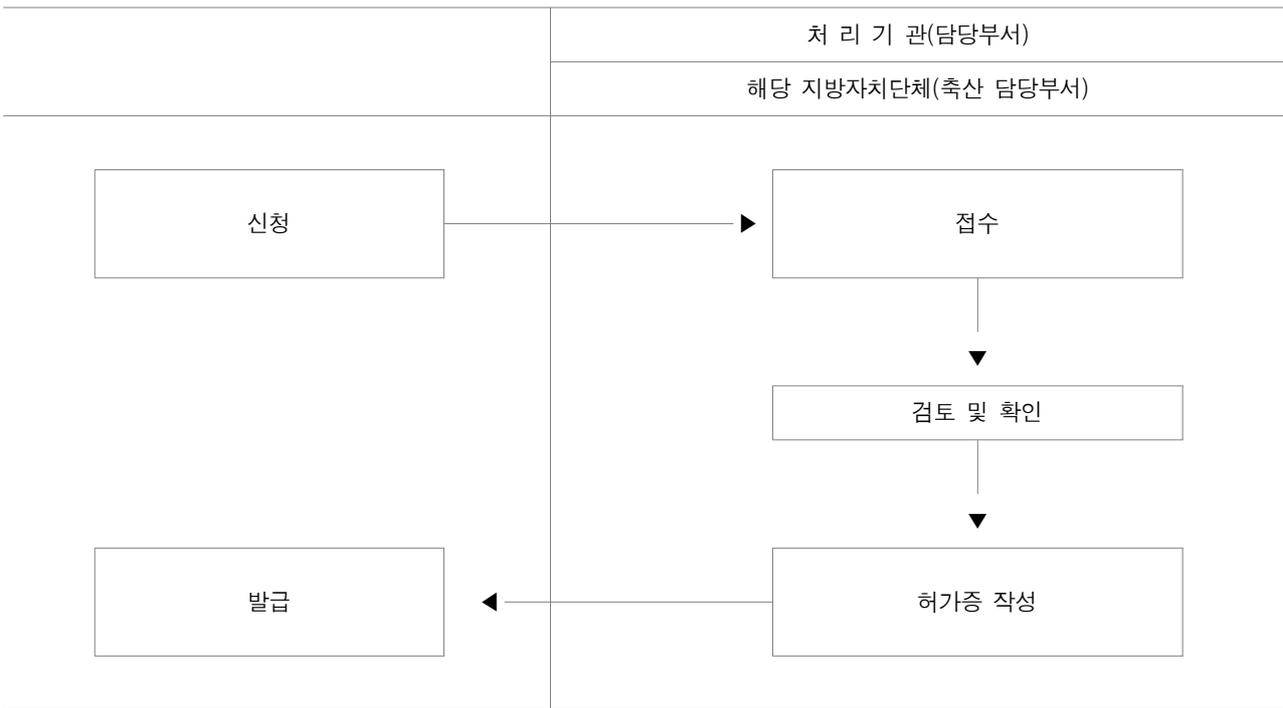
- 이 신청서(신고서)에 기재한 신청인(신고인)의 개인정보 및 가축사육 정보 등을 「개인정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축산업 허가·등록자 관리·정기점검·교육, 가축방역지원, 축산물안전관리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이 신청서(신고서)에 기재한 신청인(신고인)의 개인정보 등을 이용하여 「축산법」 제22조의2, 제28조, 제33조의2에 따라 축산업 허가 등에 관한 정보의 통합활용, 축산업 허가·등록자 관리·정기점검·교육, 가축방역지원, 축산물안전관리 등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권한의 위임·위탁된 기관, 지방자치단체, 「축산법」 제33조의3에 따른 교육총괄기관 및 교육운영기관에게 제공 및 활용하는 데 동의합니다.
- 이 신청서(신고서)에 기재한 신청인(신고인)의 개인정보 등을 이용하여 교육총괄기관 및 교육운영기관으로부터 「축산법」 제33조의2제3항에 따른 보수교육 기간을 문자메시지로 받아보는 것에 동의합니다.
  - 위 개인정보 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 동의는 축산업 허가·등록이 말소되는 날까지 유효하며(허가·등록정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총괄기관은 허가·등록 말소 후에도 축산업 허가·등록 및 교육이수자 정보관리 등을 위하여 위 개인정보를 보유·이용할 수 있습니다.
  - 위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축산법」에 따른 축산업 허가·등록 정보를 활용하는 축산 관련 각종 지원 사업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축산업 허가·등록자의 보수교육 안내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 수집·이용·제공·활용 동의자 )	신청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가축사육업 [ ]휴업[ ]폐업[ ]영업재개  
[ ]등록사항 변경**

**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5일
------	------	------	----

① 신고인	성명(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고내용	② 고유번호	③ 가축의 종류
	④ 사업장 명칭	
	⑤ 사업장 소재지	( : )
	⑥ 휴업·폐업·영업재개 및 등록사항 변경의 내용	

「축산업법」 제2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신고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등록사항 변경신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축산업 허가증(휴업·폐업신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3. 가축사육업 등록증(등록사항 변경신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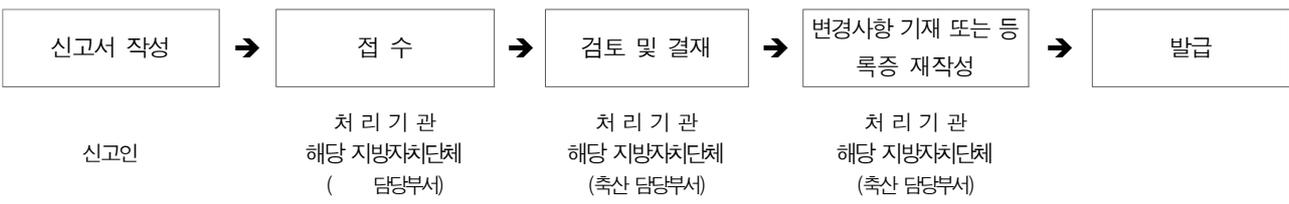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 ⑥란에는 실제 사유가 발생한 날을 함께 적습니다.
- 제출서류 중 시설·장비 등의 현황을 적은 서류에는 시설별 면적을 함께 표시합니다.

**처리절차**



#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 1. 사무안내

축산업 등록을 한 자로부터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는 자가 승계 후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축산업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

## 4. 관련법규

- 축산법 제24조
- 축산법 시행규칙 29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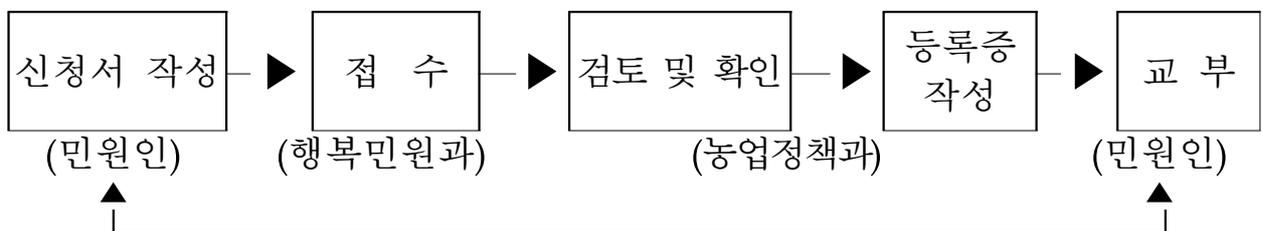
5. 수수료 : 없음

6. 구비서류 : 신청서,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상속인 증명서류

##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출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협조부서	비고
화순군	3일	농업정책과	-	

## 8. 민원처리 흐름도



##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일
사업장	명칭	축산업 종류	
	허가(등록)번호	고유번호	
	소재지		
승계를 하는 자	성명(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주소		
신고인 (승계를 받는 자)	성명(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승계사유	<input type="checkbox"/> 양도·양수 <input type="checkbox"/> 상속 <input type="checkbox"/> 법인합병		

「축산법」 제2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1.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1부(영업양도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상속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축산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매몰지, 시설, 장비, 가축사육규모 등의 현황을 적은 서류 1부 4.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 계획 1부 5. 「축산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 또는 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제5항에 따른 고유번호 증명 서류(신청인이 법인인 아닌 단체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축산업 허가증(휴업·폐업 신고 및 변경 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3.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또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른 가설 건축물 관리대장(「건축법」 상 건축허가, 건축신고, 가설건축물 건축허가 또는 축조신고 대상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4. 「건축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관련 정보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년    월    일

(            공동이용 동의자)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개인정보 및 제3자 제공·활용 동의서

- 이 신고서에 기재한 신고인의 개인정보 및 가축사육 정보 등을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축산업 허가·등록자 관리·정기점검·교육, 가축방역지원, 축산물안전관리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이 신고서에 기재한 신고인의 개인정보 등을 이용하여 「축산법」 제22조의2, 제28조, 제33조의2에 따라 축산업 허가 등에 관한 정보의 통합활용, 축산업 허가·등록자 관리·정기점검·교육, 가축방역지원, 축산물안전관리 등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권한의 위임·위탁된 기관, 지방자치단체, 「축산법」 제33조의3에 따른 교육총괄기관 및 교육운영기관에게 제공 및 활용하는 데 동의합니다.
  - 이 신고서에 기재한 신고인의 개인정보 등을 이용하여 교육총괄기관 및 교육운영기관으로부터 「축산법」 제33조의2제3항에 따른 보수교육 기간을 문자메시지로 받아보는 것에 동의합니다.
- ※ 위 개인정보 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 동의는 축산업 허가·등록이 말소되는 날까지 유효하며(허가·등록정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총괄기관은 허가·등록 말소 후에도 축산업 허가·등록 및 교육이수자 정보관리 등을 위하여 위 개인정보를 보유·이용할 수 있습니다.
- ※ 위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축산법」에 따른 축산업 허가·등록 정보를 활용하는 축산 관련 각종 지원 사업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축산업 허가·등록자의 보수교육 안내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 수집·이용·제공·활용 동의자)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처리절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축산물관련 영업 [휴업·재개업·폐업] 신고

## 1. 사무안내

도축업·집유업·축산물가공업·축산물운반업·축산물판매업의 허가(신고)를 받은 자가 그 영업을 휴업·재개업·폐업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2. 신청대상자 : 축산물관련 영업을 하는 자

## 3. 신청방법 : 방문

## 4. 관련법규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2조 제5항, 제24조 제2항
-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 제35조 제3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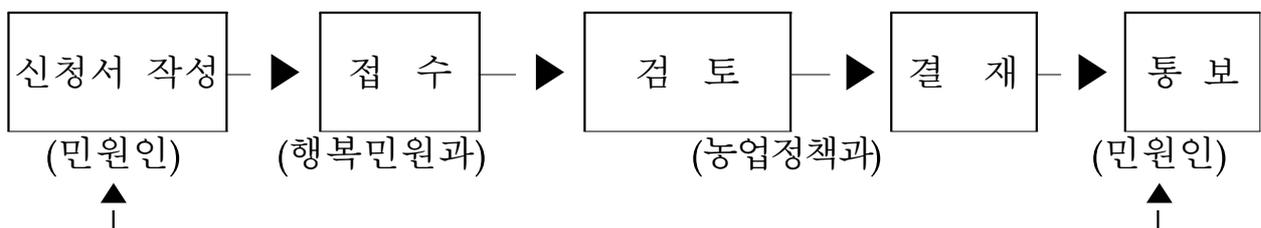
## 5. 수수료 : 없음

## 6. 구비서류 : 신고서

##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출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협조부서	비고
화순군	즉시 (3시간이내)	농업정책과	-	

## 8. 민원처리 흐름도



## 영업 휴업 · 재개업 · 폐업 신고서

※ 하단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영업장	업소명	영업의 종류				
	소재지					
	허가·신고번호	전화번호				
신고내용	신고유형	[ ] 휴업	[ ] 재개업	[ ] 폐업		
	폐업(재개업)일	년	월	일		
	휴업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사 유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제5항 또는 제2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또는 제36조제3항에 따라 영업의 휴업, 재개업 또는 폐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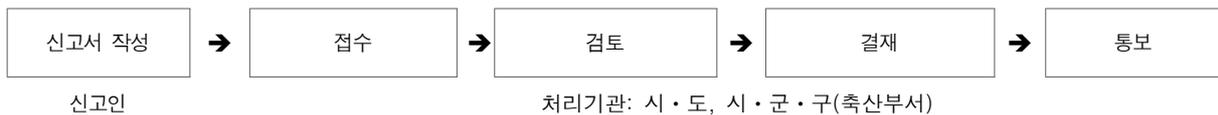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	----	-----------

### 유의사항

- 도축업과 집유업의 영업자 및 영업신고를 한 자가 휴업, 재개업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휴업, 재개업 또는 폐업 예정일 5일 전까지 허가관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영업장의 영업의 종류란에 도축업의 경우 도축업 다음에 가축의 종류를 적고[예: 도축업(소)], 축산물가공업의 경우 축산물가공업 다음에 식육가공업·유가공업·알가공업 중 해당되는 영업을 적으며[예: 축산물가공업(식육가공업)], 축산물판매업의 경우 축산물판매업 다음에 식육판매업·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우유류판매업·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식용란수집판매업 중 해당되는 영업을 적습니다[예: 축산물판매업(식육판매업)].
-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때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은 해당 폐업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해야 합니다.

### 처리절차



# 축산물운반업·축산물판매업·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신고

## 1. 사무안내

축산물 운반업·판매업을 영업하고자 하는 자가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축산물 운반업·판매업을 영업하고자 하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

## 4. 관련법규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4조제1항
-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

5. 수 수 료 : 10,000원

## 6. 유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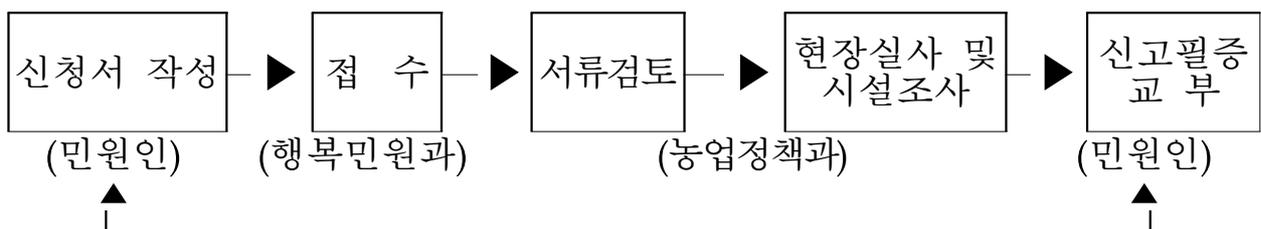
- 축산물운반업(판매업)의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7. 구비서류 : 영업신고서, 영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시설사용계약서

## 8.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출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협조부서	비고
화순군	3일	농업정책과	-	

## 9. 민원처리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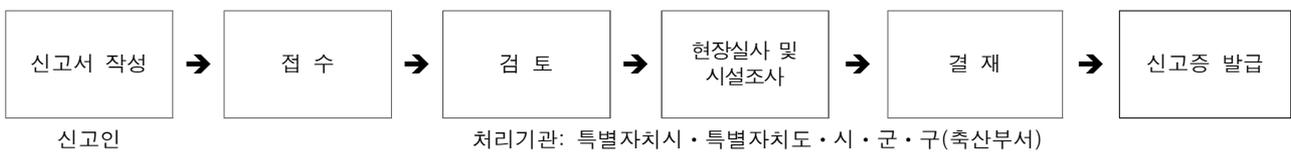
### 유의사항

1. 축산물판매업은 동일인이 같은 시설에서 식육판매업 및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도 영업별로 각각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식육판매업의 영업자가 같은 시설에서 식육부산물을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2.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를 영업장 외의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같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에 2대 이상의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를 설치하려는 경우 일련관리번호를 부여하여 함께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2개 이상의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를 설치하려면 설치대수 및 각각의 설치된 장소가 기재된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식육축적판매가공업의 영업자가 같은 시설에서 식육부산물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4.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휴업·재개업 또는 폐업을 할 때에도 신고하여야 합니다.
5. 신고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6.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해당 영업신고와 관련된 다음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지방세법」 및 그 밖의 관련 법령

### 작성방법

1. 영업의 종류란의 [ ]는 해당 란에 √표 합니다.

### 처리절차



#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

## 1. 사무안내

축산물 운반업·판매업을 신고 한 자가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 : 축산물 운반업·판매업을 영업하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

## 4. 관련법규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4조제2항
-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36조제2항

5. 수수료 : 5,000원

## 6. 유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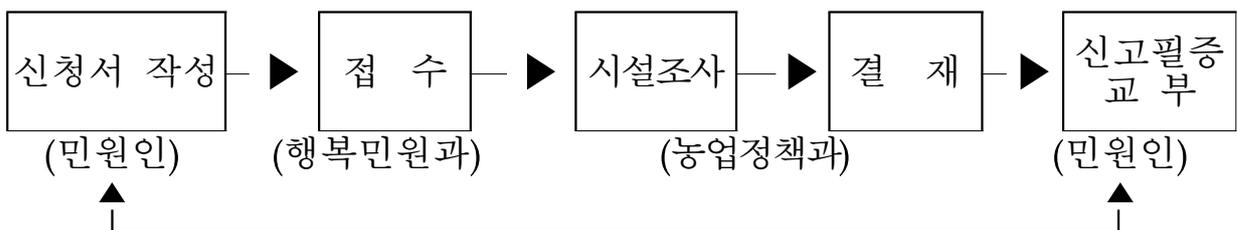
- 축산물운반업(판매업) 영업신고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행정처분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

7. 구비서류 : 신고서(구비서류 상세설명은 신고서 하단 참조)

## 8.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출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협조부서	비고
화순군	3일	농업정책과	-	

## 9. 민원처리 흐름도



##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

※ 뒤쪽의 구비서류와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3일
	(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영업신고사항	영업장 명칭(상호)			
	영업의 종류	신고번호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영업자 또는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영업장 명칭(상호)				
영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영업장 면적	m <sup>2</sup>	m <sup>2</sup>		
축산물운반용 차량 수				
품목 추가에 의한 시설변경	(시설개요 및 평면도 별첨)	(시설개요 및 평면도 별첨)		
식육가공품의 유형 및 가공방법 변경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 설 치대수 및 설치장소				
전통시장 상인회의 정관 또 는 규약에서 지정한 점포 외 영업장소에서의 축 산물 진열 여부				

변경사유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뒤쪽)

구비서류	1. 영업시설의 변경내역서(시설변경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소재지 또는 시설 변경 시 가. 영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나. 시설사용계약서 사본(시설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식육가공품의 유형 및 가공방법 설명서(식육즉석판매가공업만 해당합니다) 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의 점포 외 영업장소에서 축산물을 진열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식육판매업, 식용란수집판매업 또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자만 해당합니다) 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따른 전통시장 상인회의 정관 또는 규약 나. 가목에 따른 정관 또는 규약에서 별도로 지정한 점포 외 영업장소에 설치할 축산물 진열시설 내역서	수수료  5천원 (온라인 신청 시 4천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건축물대장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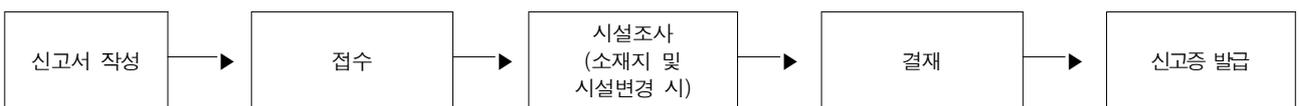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영업을 휴업, 재개업 또는 폐업할 때에도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릅니다.
2.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행정처분과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3. 신고인의 영업의 종류란에 축산물판매업의 경우 축산물판매업 다음에 식육판매업·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우유류판매업·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식용란수집판매업 중 해당되는 영업을 적습니다[예: 축산물판매업(식육판매업)].

**처리절차**



처리기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축산부서)

# 가축인공수정소

## [개설·휴업·폐업·영업재개·신고사항 변경]신고

### 1. 사무안내

정액·수정란을 암 가축에게 주입·이식하는 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가축인공수정소를 개설 또는 가축인공수정소의 개설신고를 한 자가 휴업·폐업·영업재개·신고사항 변경이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 : 가축인공수정소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

### 4. 관련법규

- 축산법 제17조
- 축산법 시행규칙 제22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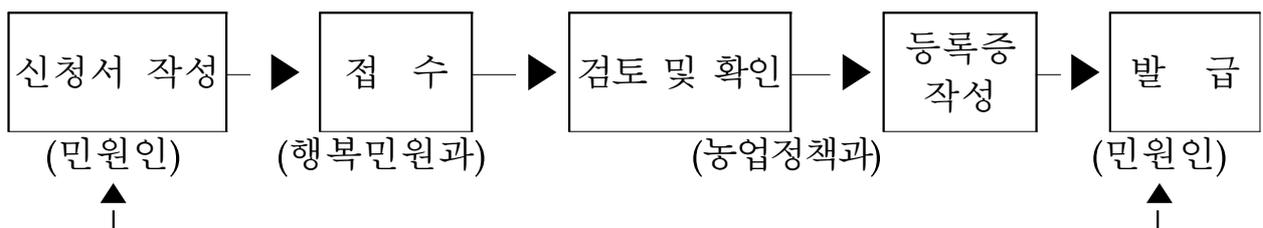
5. 수수료 : 없음

6. 구비서류 : 신청서, 수정사 또는 수의사 면허증사본, 비품명세서

###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출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협조부서	비고
화순군	5일	농업정책과	-	

### 8. 민원처리 흐름도



# 가축인공수정소 [ ] 개설 [ ] 휴업 [ ] 폐업 [ ] 영업재개 [ ] 신고사항 변경 신고서

※ [ ]는 해당란에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5일
------	------	---------

신고인	① 성명	②
	③ 주소	( : )

수정소	④ 명칭
	⑤ 소재지

⑥ 수정인원

⑦ 정액 확보방법

⑧ 휴업, 폐업, 영업재개 및 신고사항 변경 일자와 그 사유

⑨ 가축인공수정소 신고확인증 분실사유(폐업을 신고하려는 경우 가축인공수정소 신고확인증을 분실한 때만 작성합니다)

「축산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자치구청장 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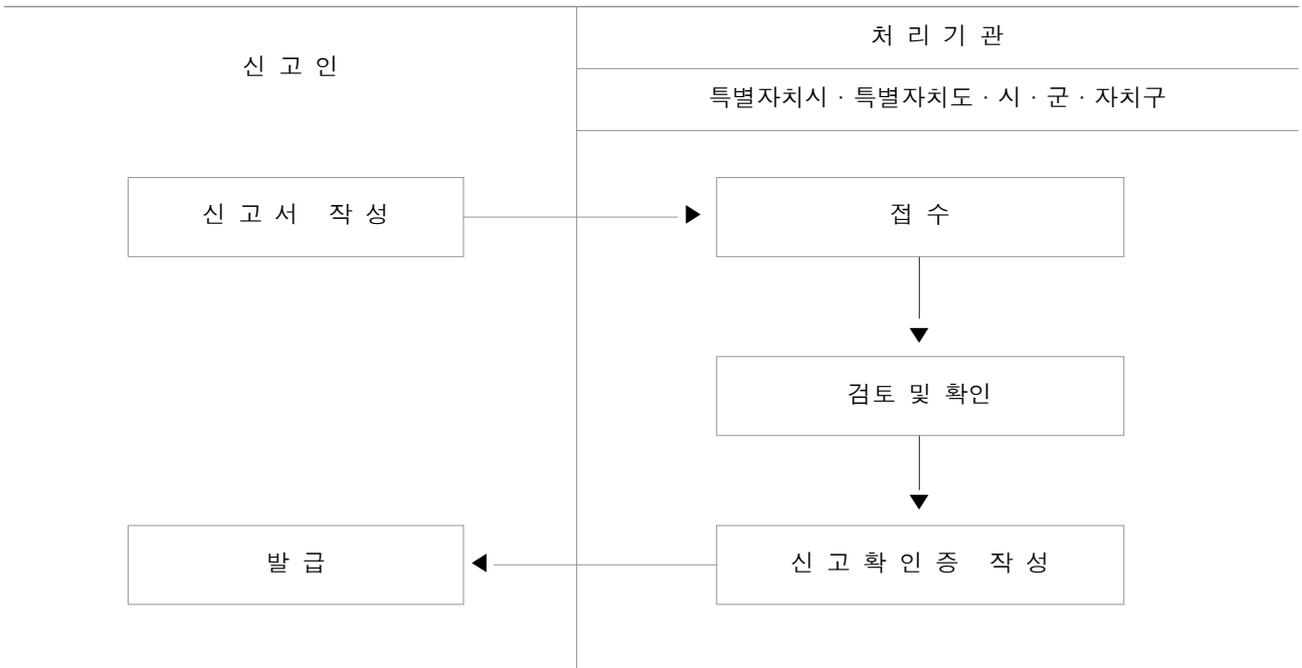
제출서류	1. 수정사 또는 수의사의 면허증 사본(개설자가 수정사 또는 수의사가 아닌 경우에는 고용된 수정사 또는 수의사의 면허증 사본) 1부(개설신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정액·난자 또는 수정란의 검사·주입 및 보관에 필요한 기구와 설비 명세서 1부(개설신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신고사항 변경신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4. 가축인공수정소 신고확인증(휴업·폐업 및 변경신고의 경우만 한정합니다). 다만, 영업의 폐업을 신고하려는 수정소 개설자가 신고확인증을 분실한 때에는 ⑨란에 가축인공수정소 신고확인증 분실사유를 기재하면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수료 없음
------	--	--------

### 유의사항

- ⑥란의 수정인원은 수정업무에 종사하는 수정사 또는 수의사의 성명을 적습니다.
- ⑦란의 정액 확보방법은 자가 생산, 국산정액 구입 또는 수입한 정액 구입 등을 적습니다.
- 신고사항 중 다음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명칭
  - 사업장의 소재지
  - 수정사 또는 수의사
- 과태료의 징수
  - 수정소의 영업을 휴업·폐업하거나 휴업 후 영업을 재개한 자 또는 신고사항을 변경한 자가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

### 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초지전용허가(변경허가) 신청

## 1. 사무안내

초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가 허가를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 : 초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

## 4. 관련법규

- 초지법 제23조
- 초지법 시행령 제16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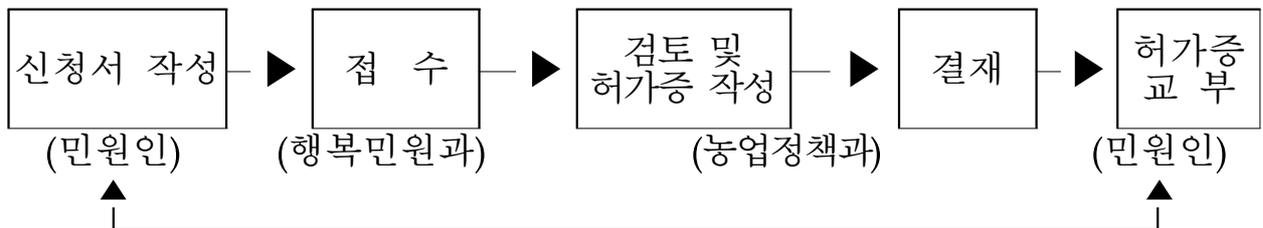
5. 수수료 : 없음

6. 구비서류 : 신청서(구비서류 상세설명은 신청서 하단참조)

##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출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협조부서	비고
화순군	35일	농업정책과	-	

## 8. 민원처리 흐름도



## 초지전용허가(변경허가)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한	35
------	-----	------	----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신청 내용	소재지				
	초지 조성일	년    월    일			
	이용현황	개량목초 재배지	사료작물 재배지	기    타	계
		m <sup>2</sup>	m <sup>2</sup>	m <sup>2</sup>	m <sup>2</sup>
	전용계획 면적	농작물 재배지	시    설    부    지	기    타	계
		m <sup>2</sup>	m <sup>2</sup>	m <sup>2</sup>	m <sup>2</sup>
	공사기간	착    공	년    월    일	준    공	년    월    일
전용 목적 및 사유					

초지법 제2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초지전용을 허가(변경허가)해 줄 것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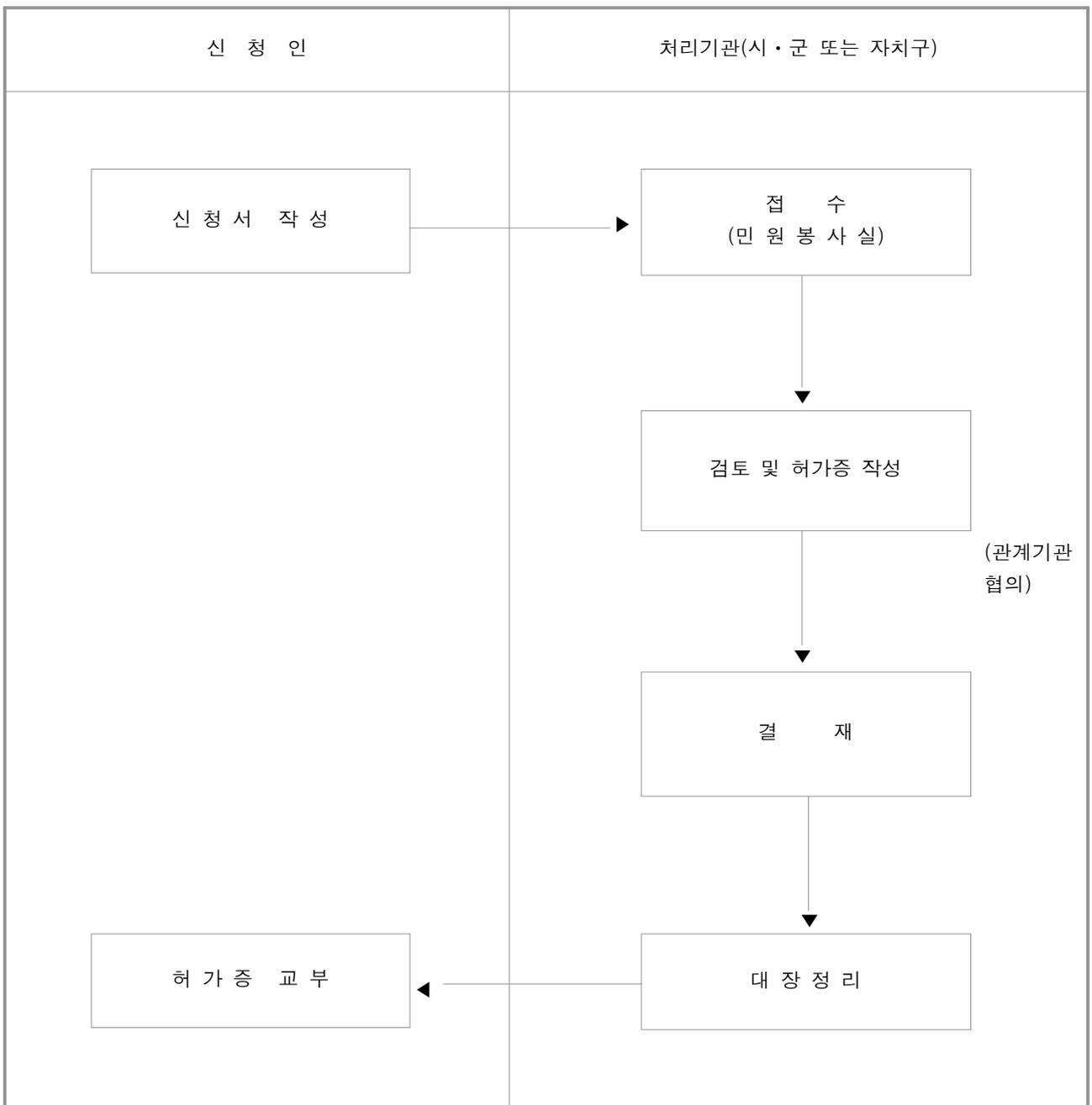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군수 • 구청장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사업계획서</li> <li>2. 초지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소유자의 초지전용 승낙서</li> <li>3. 피해방지계획서(인근 초지 또는 농지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li> <li>4. 잔여초지활용계획서(초지의 일부만을 전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li> <li>5. 변경사유서(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합니다) 및 허가증(변경허가 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li> </ol>	수수료 없음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초지조성허가 신청

## 1. 사무안내

초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자가 허가 또는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고 할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 : 초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

## 4. 관련법규

- 초지법 제5조제1항
- 초지법 시행령 제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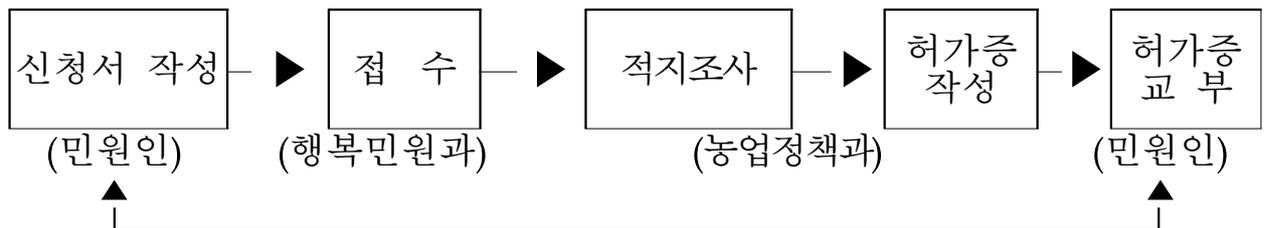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토지임대차계약서(사용승낙서) 사본

##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협조부서	비고
화 순 군	35일	농업정책과	-	

## 8. 민원처리 흐름도



## 초지조성허가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5
		생년월일	
도로명주소		(전화번호: )	

### 초지조성대상지 및 토지소유자

토지 소재지	지 번	지 목	지 적 (㎡)	조성면적 (㎡)	토지소유자	
					성 명	주 소

### 연차별 초지조성계획 및 조성방법

연차별	년	년	년	년	조성방법
조성계획	㎡	㎡	㎡	㎡	

### 초지조성 구분 및 부대시설 계획

가축사육 종류 및 마릿수	초지조성 및 부대시설 구분(㎡)					
	개량목초 재 배 지	사료작물 재 배 지	축사 및 부대시설	진입도로	기타	계

「초지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초지조성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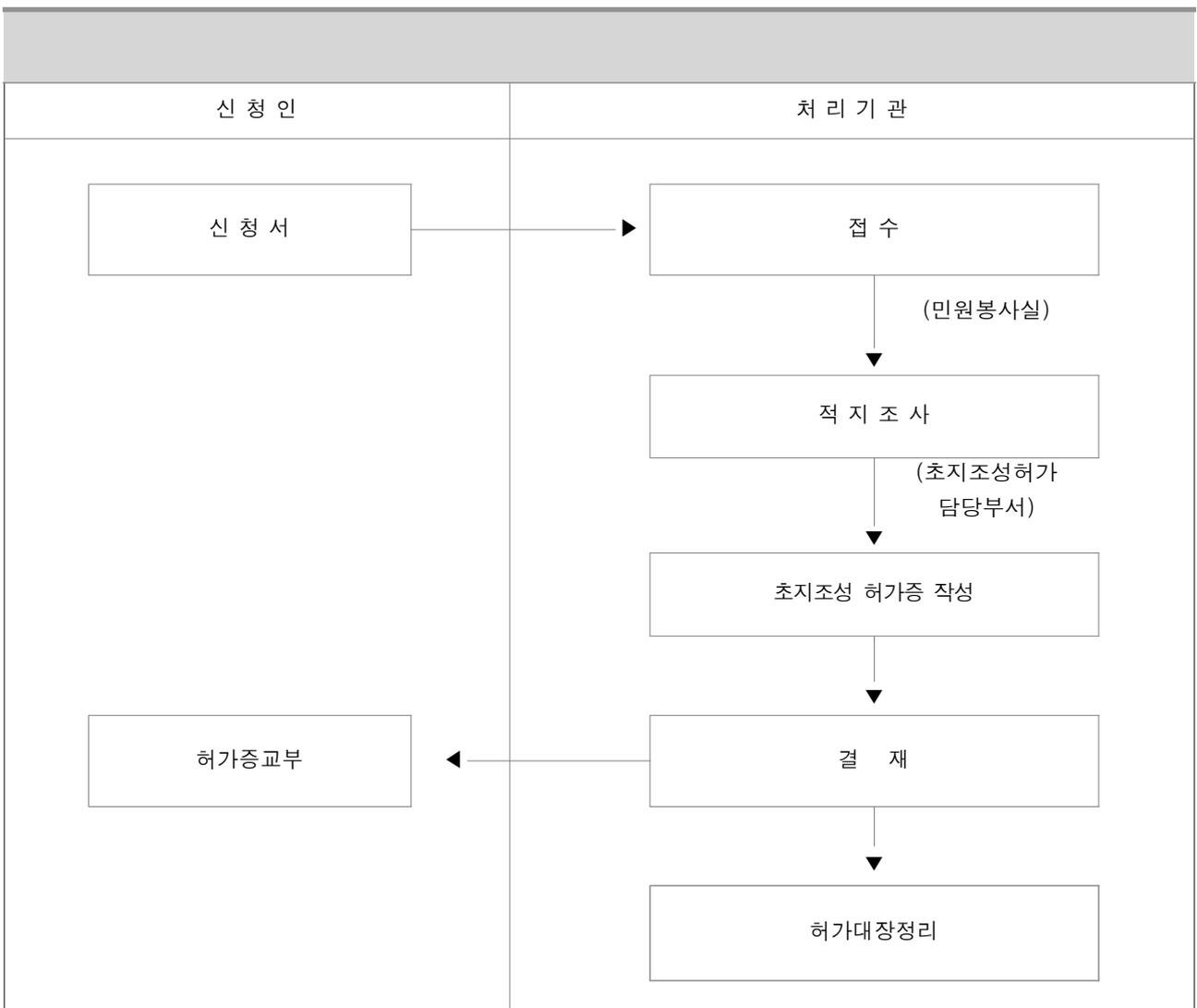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군수 • 구청장

뒤쪽 참조	수수료 없 음
-------	------------

신청인 첨부서류	1. (토지를 분할하여 연차적으로 초지를 조성하려는 경우에는 연차조성계획서를 포함한다. 다만, 초지조성허가 신청면적이 3ha 미만일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및 연차조성계획서를 생략할 수 있다) 2. 축적 2만5천분의 1 지형도(신청면적이 20ha 이상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토지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사용승낙서 사본(신청인의 소유가 아닌 사유지에 한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지적도 또는 임야도	



# 내수면어업 신고

## 1. 사무안내

내수면(하천, 댐, 저수지 기타 인공으로 조성된 담수나 기수의 수류 또는 수면)에서 면허어업 및 허가어업의 규정에 의한 어업이외의 어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 : 내수면 어업을 하고자 하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

## 4. 관련법규

- 내수면어업법 제11조
-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제9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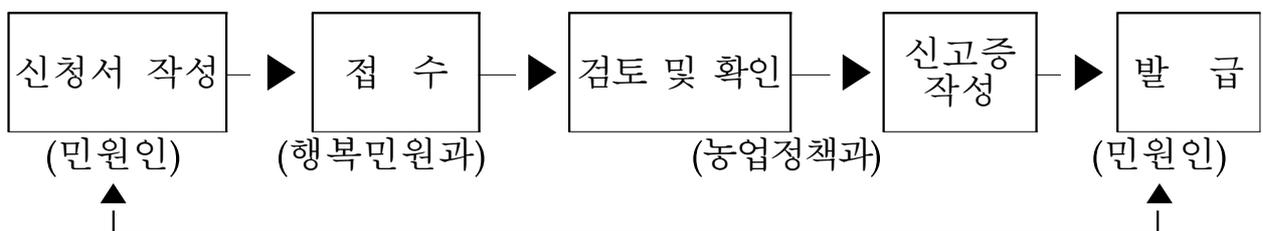
5. 수수료 : 1,000원(화순군 제증명 수수료징수조례)

6. 구비서류 : 신고서(구비서류 상세설명은 신고서 하단 참조)

##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출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협조부서	비고
화순군	1일	농업정책과	-	

## 8. 민원처리 흐름도



## 내수면어업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1일
------	-----	-----	------	----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어업의 종류와 어구의 명칭 및 규모						
시설물의 종류 및 규모	(규모 )					
어업의 방법과 종사자	종사자 명					
시설의 위치 또는 조업구역						
사용어선	선명	톤수	기관	마력	선질	진수 연월일
포획·채취물의 종류						
어업의 시기 및 어업을 하려는 기간						

「내수면어업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어업을 하기 위하여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사본1부(어선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조례에 따름
---------------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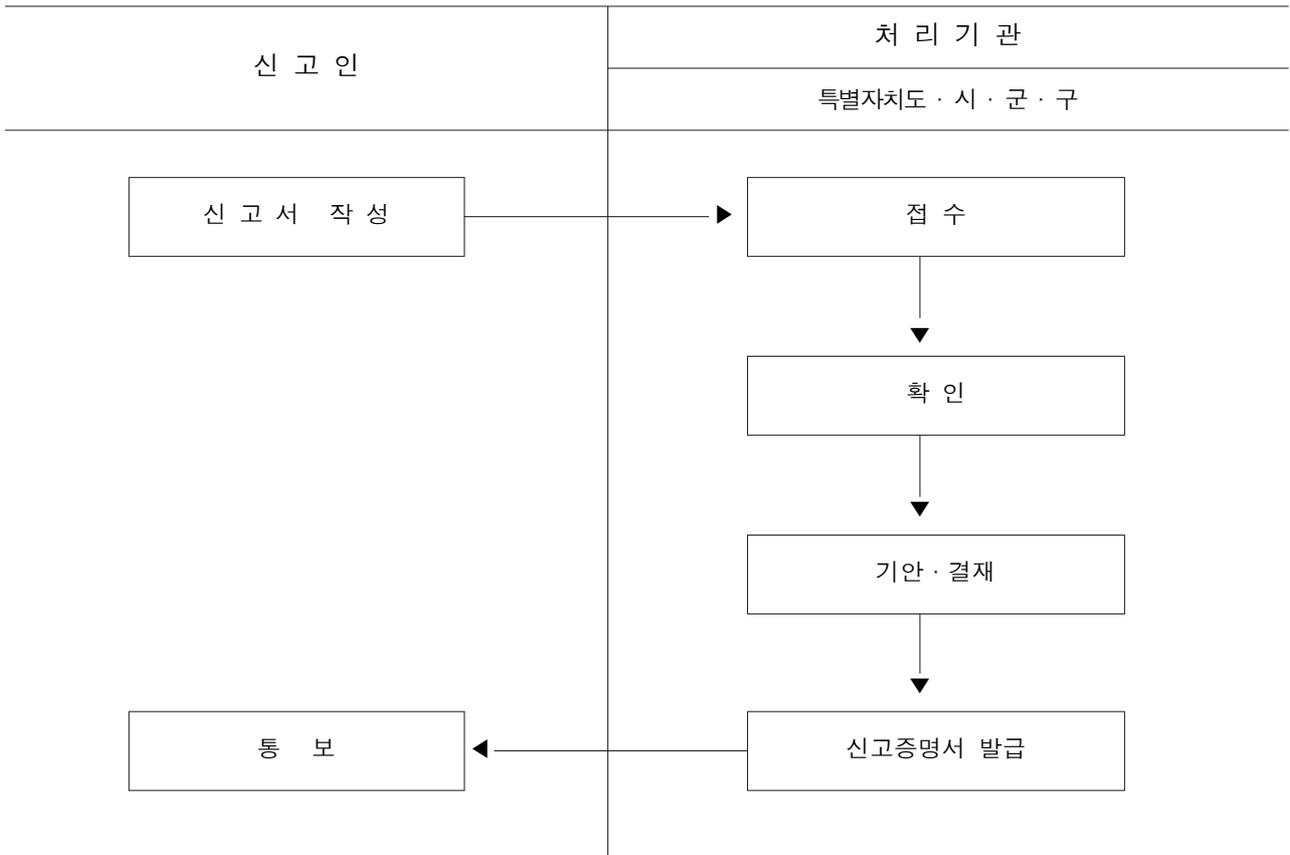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곤충의 생산업·가공업·유통업 신고

## 1. 사무안내

곤충을 사육하는 농가나 생산업·가공업·유통업을 하려는 자는 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 : 곤충 생산업·가공업·유통업을 하려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

## 4. 관련법규

-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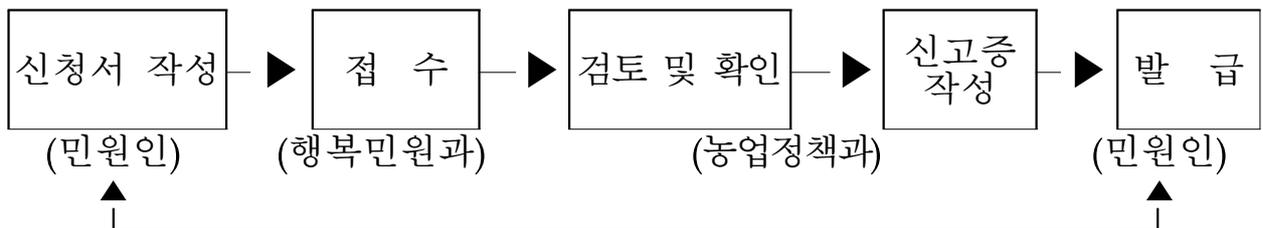
5. 수수료 : 없음

6. 구비서류 : 신고서(구비서류 상세설명은 신고서 하단 참조)

##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출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협조부서	비고
화순군	5일	농업정책과	-	

## 8. 민원처리 흐름도





# 농어촌형 승마시설 신고

## 1. 사무안내

농어촌형 승마시설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자가 말산업 육성법 제1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 : 농어촌형승마시설 설치 운영자

3. 신청방법 : 방문

## 4. 관련법규

- 말산업 육성법 제15조제1항
- 말산업 육성법 시행령 제6조제1항
- 말산업 육성법 시행규칙 제7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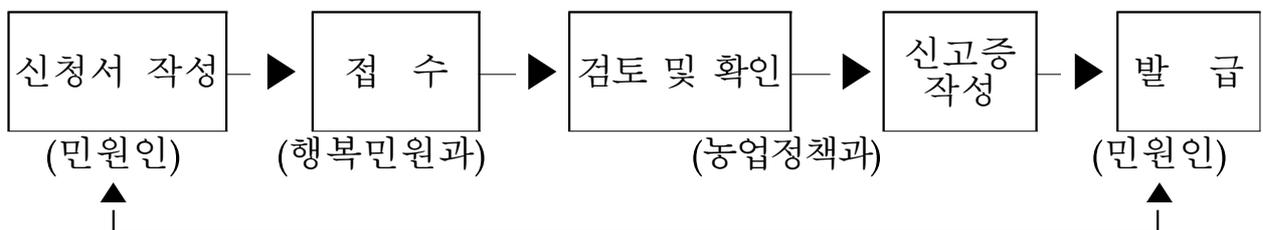
5. 수 수 료 : 미정

6. 구비서류 : 신고서(구비서류 상세설명은 신고서 하단 참조)

##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출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협조부서	비고
화순군	5일	농업정책과	-	

## 8. 민원처리 흐름도



## 농어촌형 승마시설 신고서(변경신고서)

※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신고 : 10일 변경신고 : 7일
신고인	①성명(대표자)	②주민등록번호
	③도로명주소	(전화번호: )
	④신고번호	신고일
영업소	⑤상호	전화번호
	⑥소재지	
	⑦규모	
⑧자격증 소지자	성명	자격종류 및자격번호
	도로명주소	
⑨변경 신고사항	신고번호	신고일
	변경 전	
	변경 후	

「말산업 육성법」 제1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화 순 군 수

귀하

신청(신고)인 제출서류	1.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등 승마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소유자인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합니다) 2. 시설 및 설비개요서 1부 3. 「말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른 말 등록기관에 등록된 승용말의 등록증명서 1부 4. 변경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신고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5. 임시사용 중인 건축물인 경우에는 임시사용 승인서 사본 1부	수수료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금액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건축물관리대장 2. 토지대장 3. 건물(토지)등기부등본			
공부(公簿) 확인	확인일	확인결과	확인자	비고

# 단미사료제조업 및 사료성분등록 신고

## 1. 사무안내

단미사료 제조업을 운영하고자 하는자는 단미사료제조업을 신고하고, 사료성분등록을 하고자 하는자는 「사료관리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 : 사료제조 운영자

3. 신청방법 : 방문

## 4. 관련법규

- 사료관리법 제12조제1항
-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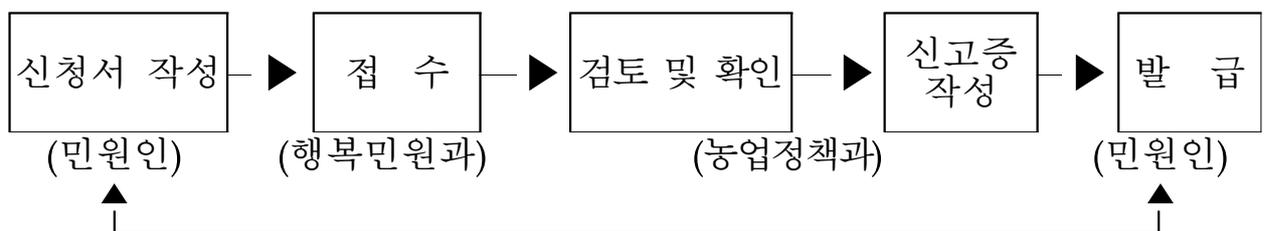
5. 수 수 료 : 단미사료제조업 30,000원, 사료성분등록 품목당 5,000원

6. 구비서류 : 신고서(구비서류 상세설명은 신고서 하단 참조)

##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구 분	제출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협조부서	비고
단미사료제조업	화 순 군	15일	농업정책과	-	
사료성분등록	화 순 군	3일	농업정책과	-	

## 8. 민원처리 흐름도



## (            ) 사료제조업등록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신청 내용	제조업체명	제조업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생산사료의 종류	생산능력 (1일 생산량)	톤
	제품생산 예정일		

「사료관리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            )  
사료 제조업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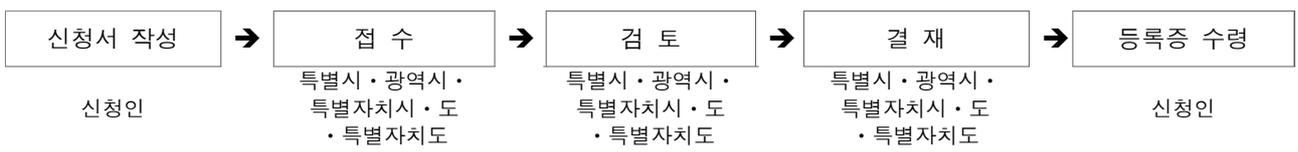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도지사 · 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시설개요서	수수료 30,000원
------	-------	----------------

### 처리절차



## 사료성분등록신청서(제조업자용)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신청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신청 내용	제조업체명	제조업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사료의 종류	사료의 형태	
	사료의 명칭	사료의 용도	
	사료의 성분명 및 성분량	제품명(영문명)	

「사료관리법」 제11조에 따른 사료공정에 적합하게 제조된 사료에 대하여 같은 법 제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료의 성분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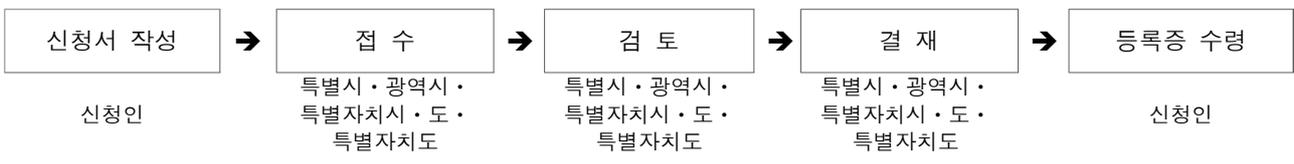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도지사 · 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 사용한 원료의 명칭을 적은 서류 2. 원료배합비율표(배합사료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3. 사료의 제조공정 설명서	수수료 품목당 5,000원
------	---	-------------------

### 처리절차



## 사료성분등록신청서(수입업자용)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신청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신청 내용	수입업체명	수입업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사료의 종류	사료의 형태	
	사료의 명칭	사료의 용도	
	제조 국가	제품명(영문명)	
	사료의 성분명 및 성분량		

「사료관리법」 제11조에 따른 사료공정에 적합하게 제조된 사료에 대하여 같은 법 제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료의 성분등록을 신청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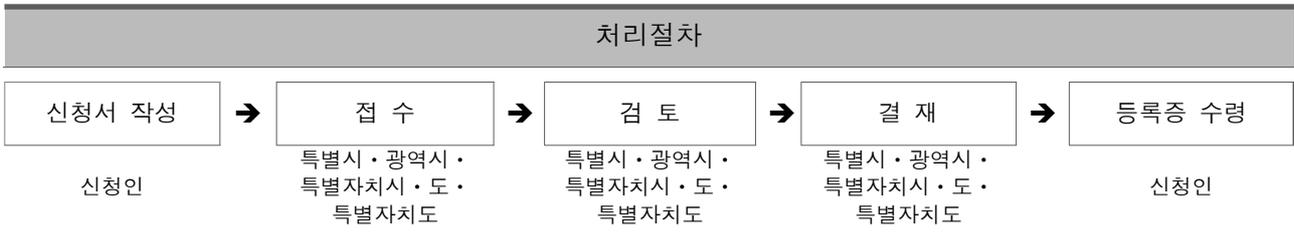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도지사 · 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 사용한 원료의 명칭을 적은 서류 2. 원료배합비율표(배합사료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3. 사료의 제조공정 설명서	수수료 품목당 5,000원
------	---	-------------------



## [ ] 휴업 · [ ] 폐업 또는 [ ] 휴업 후 영업재개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신청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신고 내용	제조업체명	제조업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제조업 등록일	생산사료
	신고사유	

「사료관리법」 제8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 ) 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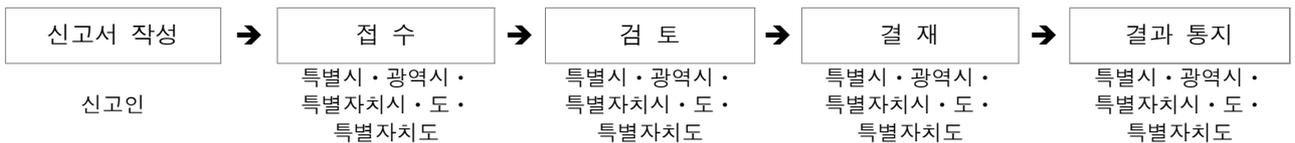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도지사 · 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 사료제조업등록증(휴업 및 폐업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2. 사유서	수수료 없음
------	---	-----------

### 처리절차



# 비료생산업 등록 신청

## 1. 사무안내

비료를 생산하여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유통·공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가 비료의 종류별로 등록을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2. 신청대상 : 비료를 생산·판매하거나 유통·공급하고자 하는 자

3. 신청방법 : 인터넷(www.minwon.go.kr), 방문, 우편

## 4. 관련법규

- 비료관리법 제11조 제1항
-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5. 수수료 : 조례규정

## 6. 유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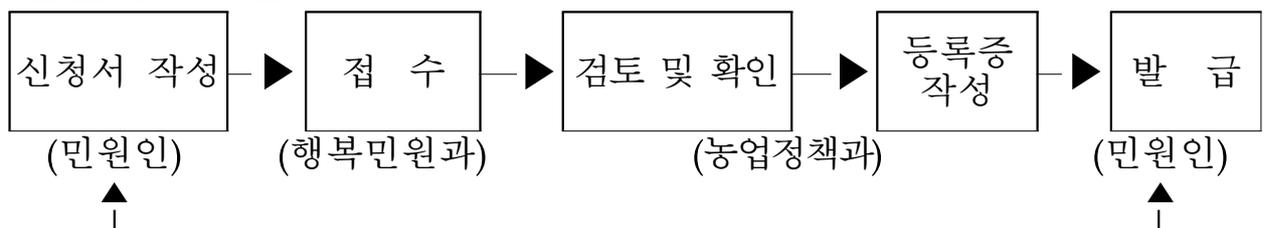
- 비료생산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비료를 생산하여 판매·무상으로 유통·공급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7. 구비서류 : 신청서(구비서류 상세설명은 신청서 하단참조)

## 8. 처리기간 및 제출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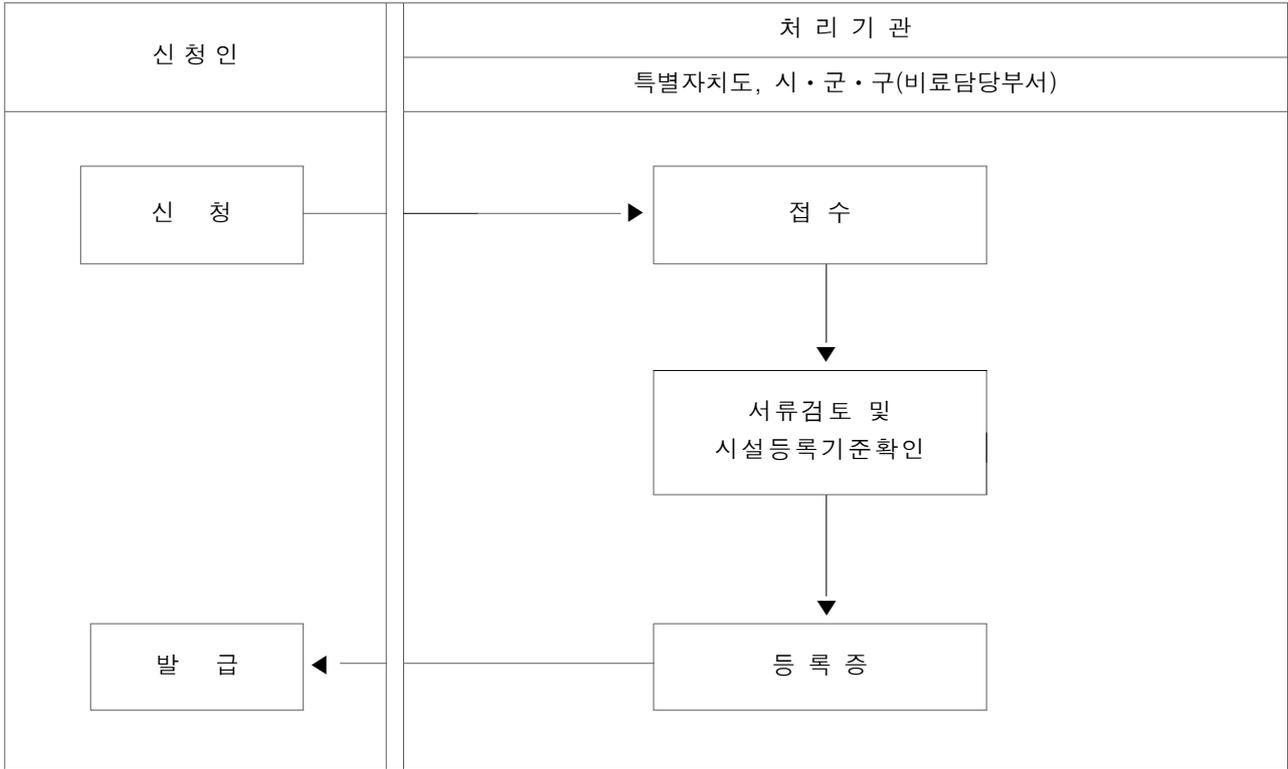
제출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협조부서	비고
화순군	14일	농업정책과	-	

## 9. 민원처리 흐름도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별첨 양식(비료생산업 등록신청서의 구비서류 제3호 관련)

### 제조공정 · 제조원료 및 그 투입비율

- 1.
2. 비료의 종류 및 명칭
3. 제조공정
4. 제조원료 및 투입비율

원료명	성분별 함유율(%)	투입비율(%)	비고
계			

※ 보조제에 대하여도 원료명 · 성분별 함유율 및 투입비율을 구체적으로 적으십시오.

# 비료생산업등록(수입업신고)사항 변경신고

## 1. 사무안내

비료생산업자가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 : 비료생산업의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

## 4. 관련법규

- 비료관리법 제11조제4항, 제12조제2항
-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제11조제1항

5. 수수료 : 없음

6. 구비서류 : 신청서(구비서류 상세설명은 신청서 하단참조)

##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구 분	제출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협조부서	비고
제조장·보관창고 소재지 이전	화순군	7일	농업정책과	-	
비료명칭의 추가	화순군	4일	농업정책과	-	
기타사항 변경	화순군	즉시 3시간이내	농업정책과	-	

## 8. 민원처리 흐름도



## [ ] 비료생산업 등록사항      변경 신고서 [ ] 비료수입업 신고사항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    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input type="radio"/> 제조장 또는 보관창고 소재지 이전: 7일 <input type="radio"/> 비료명칭의 추가: 4일 <input type="radio"/> 그 밖의 사항 변경: 즉시
------	-----	------	--

[ ] [ ]신고	번호	제      호
--------------	----	----------

신고인	(상호)명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도로명주소	전화번호

신고내용	변 경 항 목	변 경 전	변 경 후

변경사유	
------	--

「비료관리법」 제11조제4항·제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11조제1항에 따라 ( [ ] 비료생산업 등록사항, [ ] 비료수입업 신고사항)의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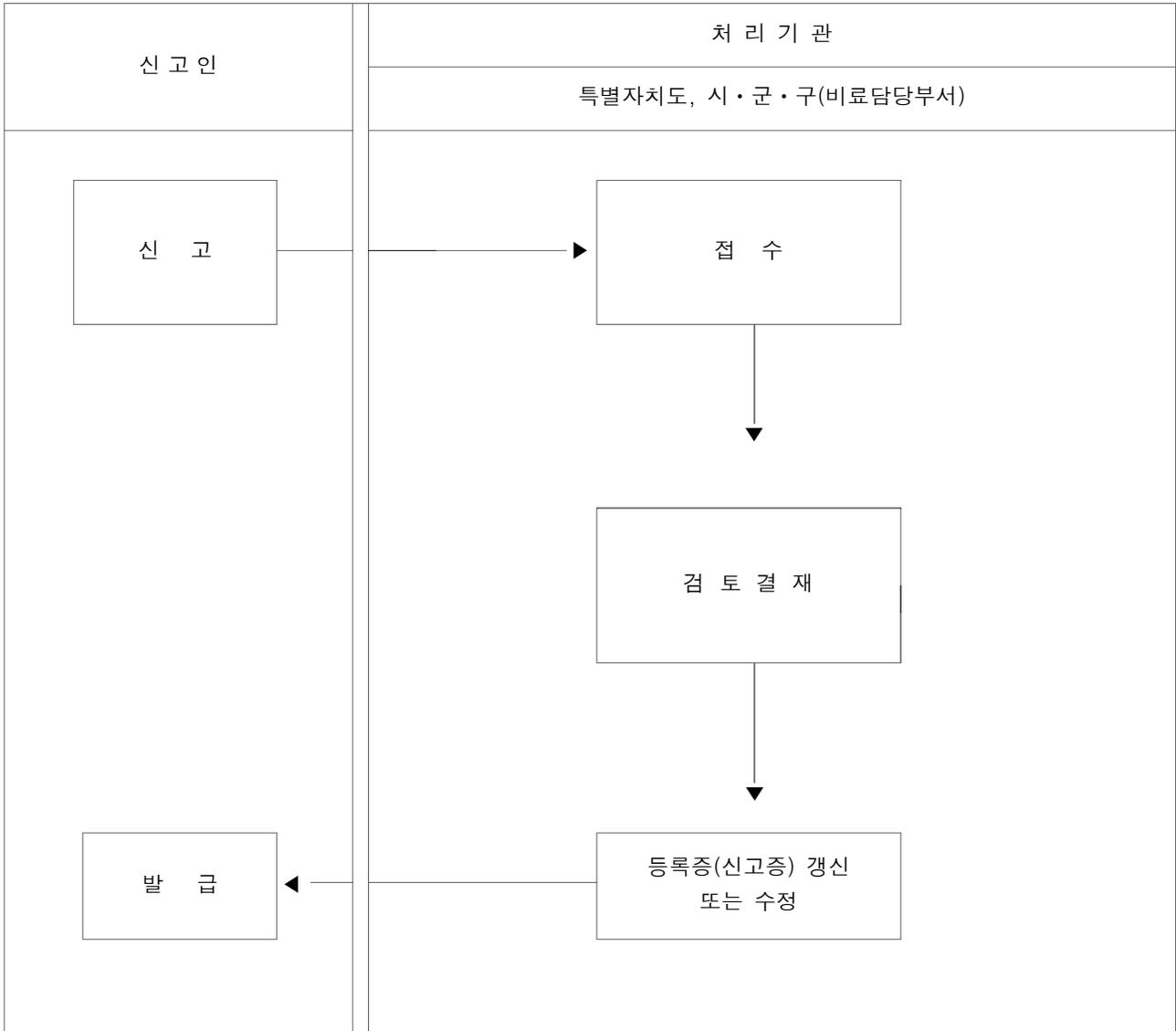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 ]비료생산업 등록증      1부 [ ]비료수입업 신고증 2. 보증성분·유해성분 및 그 밖의 규격의 성분분석서 1부 3. 제조공정·제조원료 및 그 투입비율 1부 4. 재배시험성적서 1부(공정규격에서 재배시험 결과를 검토하도록 정한 비료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는 제조원료를 변경하거나 비료명칭을 추가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수수료 없음
------	--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비포장 비료 사전신고

## 1. 사무안내

비료생산업자가 비포장(트럭 등) 비료를 판매·유통·공급·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 2일전에 신고하여야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 : 포장이 아닌 트럭 등 비포장상태로 공급하고자 하는자

3. 신청방법 : 방문

(비료의 종류, 공급.사용일자, 공급량, 공급면적, 공급지위치)

## 4. 관련법규

○ 비료관리법 제14조제1항

5. 수수료 : 없음

6. 구비서류 : 신청서(구비서류 상세설명은 신청서 하단참조)

##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구 분	제출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협조부서	비고
사전 신고	화순군	2일	농업정책과	-	

## 8. 민원처리 흐름도



## 비포장 비료 판매·유통·공급·사용 사전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일		
	(상호)명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신고내용	비료생산(수입)업 등록번호				
	비료의 종류	공급·사용 일자	공급·사용 물량(톤)	공급·사용 면적(m <sup>2</sup> )	공급·사용 소재지 (지번)

「비료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비포장 비료의 판매·유통·공급·사용을 위해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화순군수 귀하

첨부서류	비료생산(수입)업 등록증 1부	수수료 없 음
------	------------------	------------

# 농약 판매업 등록 신고

## 1. 사무안내

농약 판매업자가 판매관리인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 5일전에 신고하여야 민원사무입니다.

## 2. 신청대상 : 농약판매업 등록 희망자

## 3. 신청방법 : 방문

(신청서,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 3년이상 경력증명서 또는 자격증)

## 4. 관련법규

○ 농약관리법 제3조제2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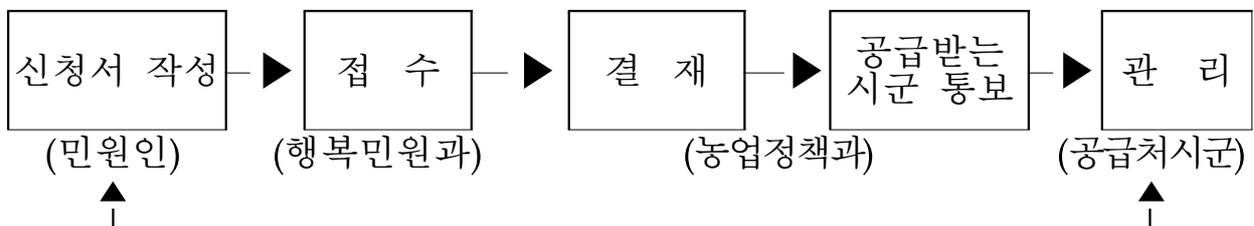
## 5. 수 수 료 : 10,000원

## 6. 구비서류 : 신청서(구비서류 상세설명은 신청서 하단참조)

##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구 분	제출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협조부서	비고
사전 신고	화순군	5일	농업정책과	-	

## 8. 민원처리 흐름도



## 판매업 [ ]등록 [ ]변경등록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4일
신청인	법인명(상호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구분	판매업 [ ]      소포장농약 판매업 [ ]		
등록 신청내역 (등록 신청하는 경우)	판매관리인 성명		생년월일
	보관창고의 소재지		
변경등록 신청 내역 (변경등록 신청하는 경우)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본인의 이-메일, 휴대폰 등을 이용해 신청서 처리와 관련된 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

「농약관리법」 제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4조의2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등록 신청 시	1. 대표자와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를 기재한 서류 1부(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시설의 명세서 1부 3.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소포장농약 판매업의 경우 보관창고에 대한 서류는 제외합니다) 4. 판매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별표7에 따름
	변경 등록 신청 시	1. 등록증 1부 2. 등록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80g/m<sup>2</sup>) 또는 중질지(80g/m<sup>2</sup>)]

# 농어촌 민박사업자 신고, 변경, 폐업

## 1. 사무안내

농어촌 민박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가 농어촌 민박의 요건을 갖추어 지정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2. 신청대상

- 신고 : 농어촌 민박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
- 변경신고 : 시설 개보수 등으로 인한 객실 수 변경, 주택연면적의 변경 등 농어촌민박사업 지정내용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 폐업신고 : 폐업희망자나 1년이상 사업을 경영하지 아니한 경우

**3. 신청방법** : 방문 (관내 6개월이상 거주한 주민이 소유하는 230㎡미만 주택(농가주택 제외), 각 실별 소화기·단독경보형감지기·일산화탄소감지기·가스누설경보기·피난구유도시설 등 설치 필수)

## 4. 관련법규

- 농어촌정비법 제86조 제1항
-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9조 제1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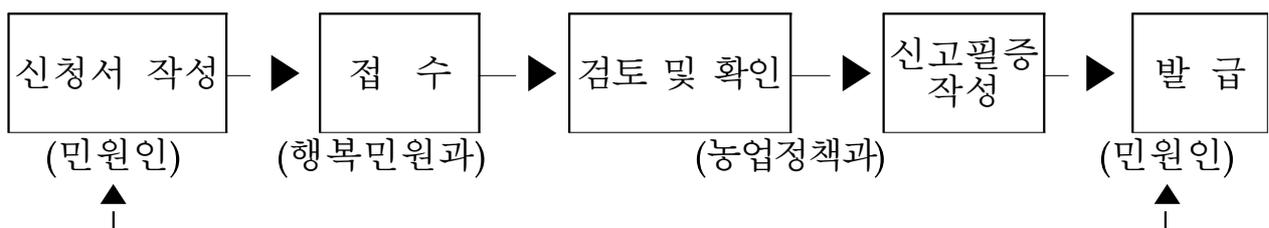
**5. 수수료** : 없음

**6. 구비서류** : 신고서(구비서류 상세설명은 신고서 하단 참조)

##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출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협조부서	비고
화순군	10일 이내	농업정책과	-	

## 8. 민원처리 흐름도



##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소유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 전입일
	주소	전화번호	
민박 소재지			민박 명칭
대지 면적	용도지역(지구)	하수처리구역 여부	
m <sup>2</sup>		[ ] 구역 내 [ ] 구역 외	
주택 연면적	전체 방 수(면적)	객실 수(면적)	
m <sup>2</sup>	개 ( m <sup>2</sup> )	개( m <sup>2</sup> )	
조식 제공			
[ ] 제공 [ ] 미 제공			

시 설	건물형태	주택 내 화장실 수	주택 내 취사시설 수
	[ ] 단 독 [ ] 다가구		
	식 수	화장실	
	[ ] 상수도 [ ] 지하수 [ ] 기 타	[ ] 수세식 [ ] 재래식	
	오수처리시설	용량: m <sup>3</sup> /일	설치연도:
	단독정화조	용량: 인용/일	설치연도:
	난방시설 총 대	[ ]가스 [ ]기름 [ ]화목(나무) [ ]연탄 [ ]전기 [ ]기타	
	소방시설	소화기: 대	단독경보형 감지기: 대
	자동확산소화기: 대	휴대용 비상조명등: 대	
	피난구유도등: 개	유도표지: 개	
	완강기: 대		
조식제공시설	냉장고: 대	조리·세척시설: [ ] 설치 [ ] 미설치	
	환기시설: [ ] 설치 [ ] 미설치	급수 시설: [ ] 수돗물 [ ] 지하수	
난방시설 및 화기취급처 안전시설	가스누설경보기: 대	일산화탄소 경보기: 대	

「농어촌정비법」 제8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p>신고인(대표자) 첨부서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신고인이 주택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로 한정하고, 전자문서로 된 것을 포함합니다)</li> <li>2.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최근 2년 이내 먹는물 수질검사성적서 1부(조식을 제공하기 위해 수도물이 아닌 지하수를 먹는물 또는 식품의 조리 등에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li> <li>3.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농어촌민박사업에 이용되고 있는 주택을 상속받은 자가 농어촌민박사업자로 신고하려는 경우로 한정하며,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만으로 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li> </ol>	<p>수수료 없음</p>
<p>담당 공무원 확인사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신고를 할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주민등록표 초본</li> <li>나. 가족관계증명서</li> <li>다. 건축물대장 및 건물등기사항증명서</li> </ul> </li> <li>2. 변경신고를 할 경우 신고인의 주민등록표 초본</li> </ol>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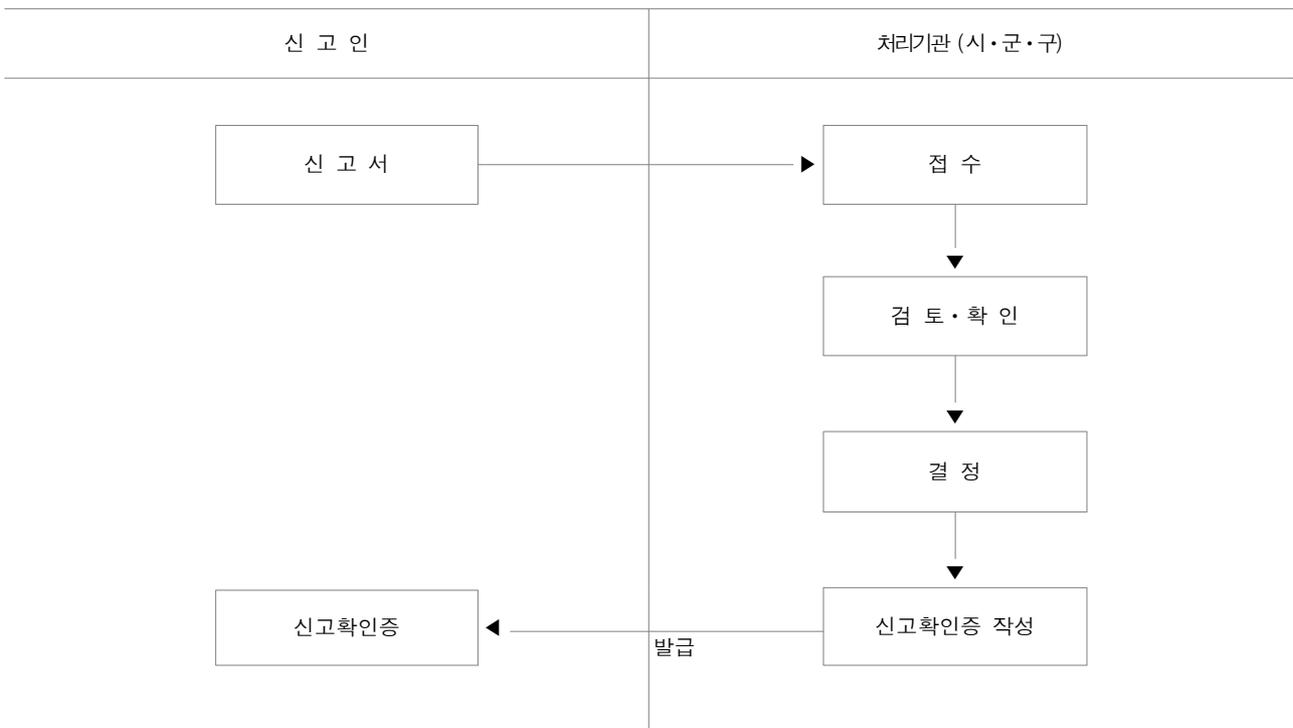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처 리 절 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농어촌민박사업 폐업신고서

	접수일	처리기간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상호(명칭)		
영업의 종류		
주사업장 소재지		
폐업일	년 월 일	
폐업 사유		
신고확인증 분실 사유		

「농어촌정비법」 제8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제4항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 폐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사업자 신고확인증(분실한 경우에는 분실 사유를 적습니다)	수수료 없음
------	---------------------------------	--------

### 처리절차

